

	연구윤리확보를위한규정	규정번호	3-5-8
		제정일자	2023.09.20.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교무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의 과제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발표 및 인사평가(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등)에 활용한 실적 등 전 범위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그 외(기타)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나. “변조”란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다.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출처 표기를 했더라도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저작물이 ‘주’이고 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 라.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3. “연구부적절행위”란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그 외(기타) 위반행위”란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말한다.
5. “제보자”라 함은 연구위반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에 알린 자를 말한다.
6.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윤리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말한다.

8. “본조사”라 함은 연구윤리 위반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연구윤리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
11.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제6조(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①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 시작 전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대상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연구유형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학은 연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확립을 위하여 대학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위원 2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종사자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회람 후 확정된 최종 심의결과는 회의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

제12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① 제보자는 교무처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무처는 익명 제보라도 구체적인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있으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그 권고에 따라 적절한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여 해당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위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보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허위임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위원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형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 검증절차)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의 입증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는 연구윤리 위반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연구윤리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총장이 5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
2. 제보내용의 본조사 필요 여부
3. 기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경우, 총장은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서식]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사항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⑥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⑦ 총장은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7조(본조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윤리 위반행위 혐의 및 관련 사항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증인·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6. 조사위원회 명단 등

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본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총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사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판정) ① 위원회는 본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장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2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① 위원장은 심의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행위 확인 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1. 연구 수행중단 또는 변경 지시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명령 또는 발간 금지
3. 자체 연구비, 용역비 등 연구에 소요된 비용 환수

4.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인된 후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제한 및 내부지침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5. 외부연구자인 경우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 위반 건수 및 고의성 유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연구참여 배제, 연구과제의 협약 해제, 기 지급된 연구비 환수, 연구윤리 위반사실 소속기관 통보 등의 조치
 6. 재임용, 승진임용 등에 사용된 연구실적물이 연구윤리 위반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재임용 및 승진임용 취소 등의 조치
 7. 신규임용에 사용된 연구실적물이 연구윤리 위반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신규임용 취소 등의 조치
 8.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행위에 속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총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사실을 인지한 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제반절차 및 방법은 본조사와 동일하다.

③ 재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조(외부지원기관 등에 대한 결과 통보) ①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한 연구과제 또는 논문이 외부 기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경우 위원회는 최종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연구의 연구비를 지원한 외부 기관(이하 “외부지원기관”이라 한다)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달하며,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외부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접수된 제보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을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6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윤리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연구윤리 위반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년 9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연구 활동에 대하여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